

학생생활연구소규정

제 정	:	2003. 3. 1
개 정	:	2016. 5. 3
폐 지	:	2017. 4. 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학생생활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) 연구소는 본 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생생활의 제반문제 조사연구 및 출판
2. 학생들의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
3. 학교생활에 관련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
4.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및 초청 강연회 실시
5. 취업대비 인성, 적성검사 실시
6. 기타 연구소 운영에 부합되는 사항

제4조(조직 및 구성)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연구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, 전문 상담교수,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④ 연구원 해당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.

⑤ 전문 상담교수는 해당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전문적인 상담경험과 해당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.

제5조(조직) 삭제

제6조(위원회) 본 연구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, 소장은 당연직으로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②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직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내담자의 고충상담에 대한 제반 처리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의 재정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연구소 규정의 개폐
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9조(회의) ① 삭제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상담자문위원) ① 연구소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상담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소장은 이 대학교 또는 다른 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학생상담 및 지도) ① 학생 상담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에 의해 실시한다.

② 접수된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는 접수된 순서와 상담 신청인의 요구 및 문제유형에 따라 한 명의 상담자에게 배정된다.

③ 접수된 상담을 배정받은 상담자는 상담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상담 시간을 정하고, 상담 신청인이 3회 이상 전화 또는 이메일 회신이 없을 경우 접수된 상담을 보류할 수 있다.

④ 상담과정에서 정신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내담자에게 정신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다.

⑤ 내담자의 상태가 상담을 통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소에서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을 중단하고 관련사항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필요시 관련 위원회를 소집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보장 및 관리) ① 연구소 구성원은 내담자에 대한 상담 내용 및 모든 기록에 관하여 비밀보장의 의무를 준수한다.

② 연구소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내담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유출하지 않는다. 단, 법에 의하여 요구받거나 내담자 또는 타인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3조(재정) 이 연구소의 운영비는 교비지원금 및 기타 전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4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5조(예, 결산 및 사업보고)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

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학상상담센터규정의 제정에 따라 2017년 4월 28일부터 폐지한다.